

[본조신설 2021. 10. 14.]

[종전 제9조의15는 제9조의16으로 이동 <2021. 10. 14.>]

제9조의16(보조금의 지급정지 등)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20. 6. 16., 2024. 5. 28.>

1. 1차 위반: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

2. 2차 위반: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. 다만,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처분을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<신설 2024. 5. 28.>

[본조신설 2011. 12. 13.]

[제9조의15에서 이동, 종전 제9조의16은 제9조의17로 이동 <2021. 10. 14.>]

제9조의17(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)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20. 6. 16., 2022. 1. 28.>

1. 1회 가담 · 공모한 경우: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

2. 2회 이상 가담 · 공모한 경우: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

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2. 30.]

[제9조의16에서 이동, 종전 제9조의17은 제9조의18로 이동 <2021. 10. 14.>]

제9조의18(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휴게소 종합계획"이라 한다)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1. 12. 13.]

[제9조의17에서 이동, 종전 제9조의18은 제9조의19로 이동 <2021. 10. 14.>]

제9조의19(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) ①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8. 7. 3., 2020. 9. 10.>

1.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

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
3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

4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
5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
6.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

7.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

8. 「한국공항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공항공사

9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

10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